친환경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발전방안

정만철*

Ⅰ. 서 론

○ 최근 식생활 패턴의 다변화와 식품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 등을 배경으로 유기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기식품 붐을 타고 외국산 유기식품의 수입 및 판매 역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또한 유기농산물의 가공은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더불어 유기농산물의 불규칙한 유통 상황에서 오는 잉여농산물의 적정처리, 유기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유기농업의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제도의 정비가 미비해, 국내 유기가공식품 산업이 정착하기도 전에 외국산 수입 유기가공식품에 의한 시장 형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음

○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CODEX기준 및 IFOAM기준 등을 기초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 기준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유기식품의 국제적인 교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의 정비를 통해 제조·가공, 보관, 유통, 판매 과정에 대한 일관되고 종합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9월 농림부에서는 2008년부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2007년 12월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은 2008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최근 수입 유기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유기가공식품이 증가하고 있는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연구사

상황에서 이들 상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보증하기 위해서는 원료부터 최종 제품까지의 일관화 된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유기농업을 비롯한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발전과 유기가공식품 산업의 확대 및 소비자의 신뢰제고를 위해서도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의무 인증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내의 유기농업생산 기반이 취약한 상황 하에서 자칫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가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 또는 수입 유기농원료를 사용하는 대형 식품기업에 대한 관리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유기가공식품을 둘러싼 현 상황과 일본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생산현황 및 관리제도

1. 친환경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현황

<표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구분별 인증현황

(단위 : 건, 호, ha, 톤)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계	건 수	5,820	8,717	11,481.0	16,187
	농 가 수	28,951	53,478	79,635.0	131,460
	면 적	28,216	49,807	74,995.2	122,882
	인 증 량	460,735	797,747	1,128,093.2	1,785,874
유 기	건 수	389	540	749	1,778
	농 가 수	1,458	2,039	3,235	7,507
	면 적	2,516	2,743	4,374	9,729
	인 증 량	23,446	38,058	55,974	107,179
전환기	건 수	392	626	827	
	농 가 수	1,825	3,364	3,932	
	면 적	2,106	3,352	4,185	
	인 증 량	13,300	30,033	39,431	
무농약	건 수	2,494	3,599	4,723	6,514
	농 가 수	9,776	15,278	21,656	31,540
	면 적	8,440	13,803	18,066	27,288
	인 증 량	167,033	242,068	320,309	443,989
저농약	건 수	2,545	3,952	5,182	7,895
	농 가 수	15,892	32,797	50,812	92,413
	면 적	15,154	29,909	48,371	85,865
	인 증 량	256,956	487,588	712,380	1,234,706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7. 12 현재)

<표 2> 연도별 유기식품 수입현황

(단위 : 건, 톤, 천달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농 산 물	건수	109	147	235
	중량(톤)	6,827	5,582	8,952
	금액(천$)	3,397	4,985	7,041
가공식품	건수	2,201	2,527	3,318
	중량(톤)	7,101	11,275	15,776
	금액(천$)	32,034	26,941	36,138

주) 수입된 유기농산물 및 가공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바목 관련「별지5」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 의거 제품명에 "유기" 또는 "organic"표시가 있는 제품에 한함

<표 3>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의 종류(국내)

구 분	품 목	품목수
조미식품	감식초, 고춧가루, 고춧가루, 말린청국장, 메주, 메줏가루, 볶음참깨, 쥐눈이콩분말, 청국장분말, 청국장환, 토마토잼	11
장 류	간장, 고추장, 국간장, 된장, 쌈장, 찹쌀고추장, 청국쌈장, 청국장	8
식용기름류	들기름, 참기름,	2
당 류	맥아엿, 조청쌀엿	2
음 료 류	가시오가피즙, 가시오가피포도즙, 단호박농축액, 셀러리즙, 시금치즙, 아스파라거스즙, 양상추즙, 양파쥬스, 유기농새싹혼합즙, 쥬스류, 토마토쥬스, 포도쥬스, 포도즙, 호박고구마농축액, 호박즙	15
다(茶) 류	가루녹차, 냉녹차현미티백, 녹차, 녹차음료, 녹차티백, 말차, 민들레차, 발아현미녹차티백, 발효차, 보리차, 삼백초엽차, 삼백초티백, 어성초엽차, 어성초티백, 엽차, 함초 고형추출차, 현미녹차티백, 현미차, 홍차	19
김치·절임류	깍두기, 깻잎김치, 깻잎절임, 동치미, 마늘초절임, 배추김치, 배추묵힌김치, 백김치, 열무김치, 열무물김치, 쪽파김치, 총각김치, 포기김치, 풋고추절임	14
떡·과자류	가래떡, 누룽지, 떡복기떡, 현미스낵, 누룽지스낵	5
기 타	감자전분, 날콩가루, 들깨가루, 민들레분말, 민들레환, 보리가루, 볶음콩, 볶음콩가루, 수수가루, 슬림두부, 쌀가루, 엿기름, 율무가루, 찹쌀가루, 콩국수가루, 현미분말, 호박분말, 흑미가루	18
합 계		**94**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08년)

○ 2007년도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건수는 187건이었으며, 조미식품류를 비롯해 94개 품목이 유기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았음

2.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

가.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관리의 변화

○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에 관한 규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02-4호)')을 근거로 관리하던 것으로 '식품산업육성법'(제23조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을 근거로 관리

○ '식품산업육성법'의 제정과 함께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과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구체적인 유기가공식품 관리방안 제시

- 시행규칙에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정기심사', '정기심사 절차', '유기식품의 인증절차', '유기식품 인증서의 교부', '유기식품 인증의 표지', '수입유기식품의 인증'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음

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기가공식품 표시

○ 현재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표시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10조(표시기준)에 의거한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표시대상) 바목(유기가공식품) 관련 '유기가공식품의 세부표시기준'(별지5)을 근거로 하고 있음

<표 4> 유기농산물 함량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표시 기준

유기농산물 함량	표 시 사 항
원재료의 100%	- '유기농100%'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제품명 또는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 가능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을 백분율(%)로 표시
원재료의 95%이상	-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제품명 또는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에 표시 가능
원재료의 70%이상-95%미만	- 용기·포장의 **주표시면을 제외한 표시면**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표시 가능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을 백분율(%)로 표시
특정한 원재료로 유기농산물을 사용한 식품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만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음 - 원재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유기농산물을 백분율(%)로 표시

○ 국내에서 생산하는 유기가공식품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원재료의 95% 이상이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농산물(축산물 포함)이어야 함

○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유기가공식품의 경우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의 품질기준이 우선 적용되지만, 기준이 없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수출국 품질기준 적용하고 있으며, 수출국의 인증기관요건에 적합한 국제인증기관(IFOAM 등) 등에서 발행한 인증서로 대체

○ 2008년 6월 28일 '식품산업육성법'의 시행과 함께 유기가공식품에 관한 관리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식약청에서도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제도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이원화된 관리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부처간 조정이 필요할 것임

○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표시 예(김치 및 녹즙분말)

<그림 1> 국내산 유기가공식품 표시 예

<그림 2> 수입산 유기가공식품의 표시 예

Ⅲ. 일본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생산현황 및 관리제도

1. 일본의 유기JAS제도의 개요

가. 유기농산물 등에 관한 검사인증제도 도입 배경

○ 일본에서는 농산물의 안전성 및 건강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기”, “저농약” 등의 표시가 범람하고 소비자의 적정한 상품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1992년에 표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표시의 적정화를 꾀해왔으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유기농산물에 대한 부적절한 표시나 생산기준이 통일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한편 국제적으로는 1991년부터 CODEX위원회(FAO/WHO합동 식품규격위원회)에서 유기식품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검토 작업이 시작되어, 1999년에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되게 되었음

○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1999년에 JAS법을 개정하고, 이에 근거해 유기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에 관한 일본농림규격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유기축산물과 유기사료에 대한 일본농림규격도 제정되어 유기식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졌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유기식품에 관한 일본농림규격은 주로 코덱스가이드라인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EU 15개국과 미국, 아르헨티나, 호주, 스위스, 뉴질랜드 등의 외국과는 동등성을 인정해 유기식품의 수입에 일본의 등록인정기관에서 인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음

나. 인증의 내용

○ 생산자가 자신이 생산한 유기농산물 및 유기식품에 「유기」표시를 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JAS법 제9조의 10 제1항에 근거한 법령지정에 따른 인증의무조항에 의거 그 생산・관리방법이 JAS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농림수산성에 등록된 인증기관(이하 ‘등록인정기관’)을 통해 미리 인증을 받아야 하며, 등록인정기관은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ISO/IEC GUIDE 65)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격 이상의 기관으로, 검사

원, 판정원 등의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확보해야 함

○ 인증 대상자는 정해진 자격을 지닌 생산행정관리자(生産行程管理者 ; 유기재배농가)나 생산행정관리자가 존재하는 생산자단체의 회원,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자, 소분업자, 수입업자 등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은 포장(圃場)별로 받으며, 농작물의 생산부터 수확, 저장,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서 유기JAS규격에 적합하도록 생산·관리가 행해지고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하고, 인증마크관리담당자(格付擔當者)를 두어 유기JAS마크의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관리해야 함

<그림 3> 유기JAS마크

다. 인증 절차

○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유기식품을 생산하는 농업인, 가공업자, 또는 유기식품을 유통하는 소분업자 및 수입업자가 유기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야 함

① 우선 등록인정기관으로서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요구사항”(ISO/IEC GUIDE 65)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격 이상의 기관은 농림수산대신에게 등록인정기관으로의 설립을 신청

② 신청을 받은 농림수산성은 심사를 통해 등록인정기관으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 등록인정기관으로 인가

③ 인가를 받은 등록인정기관은 생산행정관리자와 제조업자 등의 인증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 서류의 체크 및 현장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을 지

명하여 검사일의 일정 등을 조정하고, 검사원은 서류심사가 끝난 신청자의 포장과 창고, 가공공장, 소분장소, 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유기JAS 규격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는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사무국에 보고

④ 보고(현지검사보고서)를 접수한 사무국은 판정위원회에 유기인정의 판정을 위탁하고, 판정위원회(복수의 판정위원으로 구성되는 경우)에서는 검사원이 작성한 현지검사보고서와 신청자가 제출한 인정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신청내용 및 검사보고내용이 유기JAS인정에 적합한가를 판정하여 사무국에 보고

⑤ 판정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이 인정되면 신청자에게 인정서를 교부하고, 신청자는 생산물에 유기JAS마크의 부착과 함께 유기표시를 해서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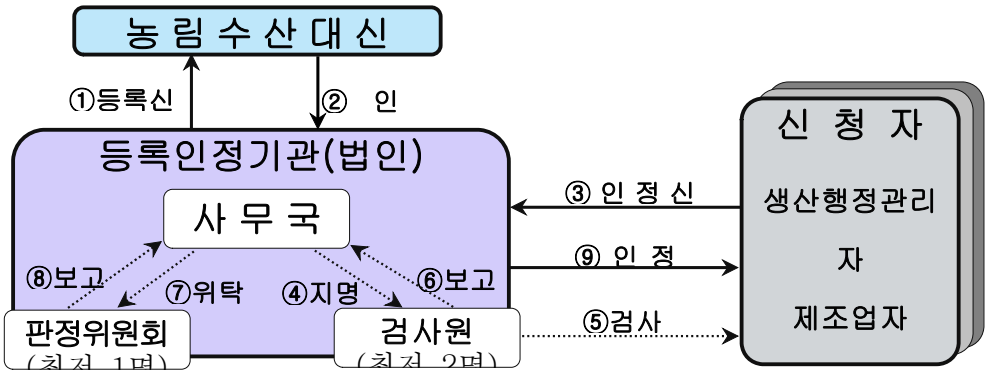

<그림 4> 유기JAS법에 근거한 인증시스템

2. 유기식품 인증현황

가. 대상별 인증 건수 및 농가수

○ 2008년 3월말 현재 인증을 받은 일본 국내 유기농가수는 3,319농가이며,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 가운데 유기JAS마크를 전략으로 유기식품을 일본에 수출하기 위해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외국의 유기농가가 전체 유기인증 취득농가의 약 4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또한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자의 인증건수를 보면, 전체 제조업자 인증건수 1,406건 가운데 해외 제조업자의 인증건수가 475건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시장을 겨냥한 외국의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5> 인증 농가수 및 사업자 건수(2008년 3월말 현재)

구분	생산자		제조업자		소분업자		수입업자		합계	농가수	
		%		%		%		%			%
국내	1,753	77.8	931	66.2	665	77.7	136	100.0	3,485	3,319	100.0
해외	501	22.2	475	33.8	191	22.3	-	-	1,167	-	-
계	2,254	100.0	1,406	100.0	856	100.0	136	100.0	4,652	3,319	100.0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현(縣)별 유기인정사업자수(2008년 3월말 현재)」를 참고로 작성

나. 가공식품 인증 추이

○ 2006년에 일본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은 18만 7,455톤으로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6만 9,777톤보다 약 2.7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도인 2005년도에는 외국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이 21만 6,059톤으로 일본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14만 9,811톤에 비해 약 44%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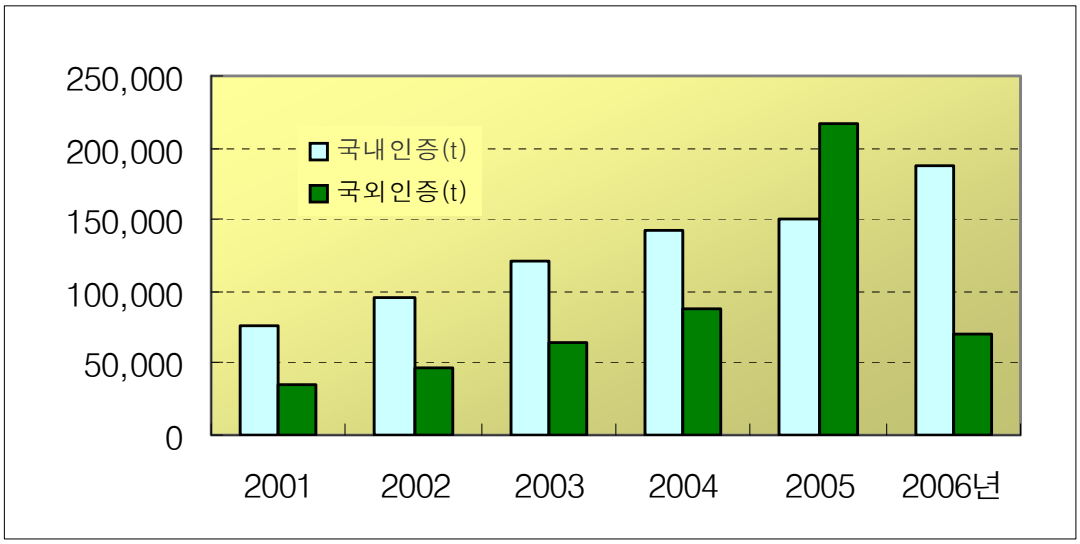

자료 : 농림수산성, '인정사업자에 관한 인증 실적(2001～2006)'

<그림 5> 연도별 유기가공식품 인증량 추이

○ 2006년도에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과실음료 이외의 과수가공식품의 국외인증이 2005년도에 158,871톤 이었지만 2006년도에는 4,881톤으로 감소한 데에 원인이 있음

○ 같은 해 일본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가운데에서는 두부가 73,570톤(전체의 39.2%)으로 가장 많았고, 낫또가 36,919톤(19.7%)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두유(21,971톤), 커피음료(10,272), 간장, 기타 대두가공품 등의 순임

○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가운데에서는 설탕이 14,657톤으로 21.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삶은 채소(9,323톤), 괴실음료(7,52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품목에 대한 순위 변화가 심한 편임

<표 6> JAS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2006년 12월말 현재)

구 분	일본 국내에서 인증	해외에서 인증[1)]
냉동채소	119	5,047
채소통조림	12	5,575
삶은 채소	802	7,378
기타 채소가공품	1,499	2,306
과실음료	3,037	2,116
기타 과실가공품	1,018	3,414
채소음료	1,317	158,871
차(茶)류	2,902	0
두유	24,932	0
두부	70,025	0
낫또	9,908	0
된장	3,476	579
간장	6,405	0
기타 대두가공품	7,120	356
녹차	1,423	37
커피원두	1,930	669
넛츠류(nuts)	1,854	3,241
곤약	2,646	1,237
식용 식물유지	31	3,671
설탕	0	18,918
기타 가공식품	9,356[2)]	2,643
합 계	149,811	216,059

주 1) 해외에서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에는 외국에서 소비된 것과 일본 이외로 수출한 것도 포함

2)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기타 가공식품에는 식초, 팥앙금 등이 포함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및「平成18年度有機農産物等の格付實績」을 참고로 작성

Ⅳ. 시사점 및 결론

○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의 유기식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유기식품의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 지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으로는 1999년 CODEX위원회에서 유기식품의 Global Standard인 "유기생산식품의 생산, 가공, 표시 및 판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영향을 받아 일본에서도 2001년부터 JAS법의 개정을 통한 유기JAS법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을 시작했다.

○ 2008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정부가 금년도부터 시행하기로 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유기가공식품 인증업무의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

이명박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을 총괄하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관리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기가공식품은 제품 속성상 원료농산물부터 가공, 유통, 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농림수산식품부와 식약청이 양분되어 관리하는 체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금년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식품산업진흥법'의 제정을 계기로 유기가공식품 인증 등 관리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완전히 이관해야 할 것이다.

②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관리제도의 병설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근거로 유기, 무농약, 저농약 등으로 구분되어져 있으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기로 제한하는 것은 전체적인 친환경농업의 확대·육성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인증제도의 부재에 따라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는 외국산 유기가공식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특히 유기농업 생산기반이 취약한 국내 상황 하에서 국내산 유기가공식품의 원료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외국산 원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일부 식품기업만을 관리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의 시행을 다소 늦추

더라도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농가단위 또는 생산현장과 밀착한 친환경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저농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품에 대해서도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농가공형태의 가공공장에 대한 규제 완화 및 지원

우리나라의 국내 유기가공식품 생산의 특징을 보면 외국에서 원료 유기농산물을 수입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식품기업의 시장점유율이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생산과 가공이 결합된 농가공형태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들도 많은 것도 현실이다. 유기가공식품의 제조에 있어서는 일반농산물과의 철저한 원료의 구분과 공장의 관리를 필요로 한다. 대규모 식품기업의 경우 이러한 유기적 기준에 적합한 공장설비가 가능하지만 농가공형태의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유기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및 유기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원료생산과 가공을 함께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식품제조업체 설립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조직이 농가공형태의 유기가공식품 산업에 쉽게 참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④ 민간인증기관의 자율성 확보 강화

일본을 비롯해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유기식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철저하게 민간에 이양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들 인증기관을 인가 및 관리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의 인가와 더불어 검사·인증업무를 병행하고 있지만, 이는 CODEX 등 국제적인 기준에서 말하는 제3자 인증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증업무를 완전 민간에 이양하고 정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인가·관리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광우병 파동 등 식품안전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유기가공식품을 비롯한 유기식품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의 유기식품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객관성이 담보된 인증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하지만 성급한 제도의 도입으로 효과보다는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면 제도 자체의 도입에 대한 재고도 필요할 것이다.